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7.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457	박주민의원 등 11인	2024.06.13.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2	687	강훈식의원 등 12인	2024.06.20.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3	2706	오기형의원· 차규근의원 등 30인	2024.08.0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4	2847	박상혁의원 등 11인	2024.08.1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5	3608	박상혁의원 등 15인	2024.09.0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6	4475	김남근의원 등 29인	2024.09.3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7	4700	박균택의원 등 11인	2024.10.15.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8	4732	이강일의원 등 13인	2024.10.16.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9	10020	이소영의원 등 10인	2025.04.22.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07.01.)
				소위 심사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10	10044	윤준병의원 등 13인	2025.04.22.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07.01.)
				소위 심사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11	10666	이정문의원 등 25인	2025.06.05.	상정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7.01.)
				소위 심사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12	10695	신장식의원 등 14인	2025.06.1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07.01.)
				소위 심사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3	1063	정부	2024.06.27.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0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14	5704	이정문의원 등 18인	2024.11.1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가.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는 위 1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1～12의 법률안 12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3·14의 법률안 2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나.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7. 3.)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

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안 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68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書面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으로 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82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00조제2항 본문 중 "사외이사의"를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4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를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로 한다.

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외이사로서의”를 “독립이사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11제2항제2호 중 “사외이사일”을 “독립이사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12제4항 중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을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

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5조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 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第368條(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權의 행사) ① (생 략) ② 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 (현행과 동일) ② ----------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 ③ (현행과 동일)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

	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생 략)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 제1항의 독립이사의----------.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② (생 략)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3분의----------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독립이사는--.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독립이사는----------.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	7. --------독립이사로서의--

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독립이사----------독립이사----------독립이사----------독립이사----------.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독립이사----------독립이사----------. ---------독립이사----------독립이사----------.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⑤ ----------독립이사----------독립이사----------

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독립이사---------독립이사---------.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생략)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2. ----------독립이사일---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③ ----------독립이사가----------

는 그 직을 상실한다.	----------.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독립이사의----------독립이사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	④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

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⑦ ----------. <후단 삭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 8. (생 략) ④ (생 략)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독립이사---------- 2. ----------독립이사----------독립이사----------독립이사---------- 3. ----------독립이사를---------- 4.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